

에서 추천한 분을.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이것은 第3條第3項을 보면 專門家 및 上水道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人士 中에서 이것은 필 지회들이 예상하고 있다면 市議會 水資源管理委員會를 상정해서 이런 文句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水資源管理委員會 委員님 중에서 몇 분을 우리가 委囑해서 委員會로 구성하느냐 하는 問題는, 몇 분이냐 하는 問題는 그 委員會의 성격을 신중히 檢討해 봐야 되겠습니다. 3人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해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委員長 閔相今 本部長님, 아까 本部長님께서 우리 水資源管理委員會에서 한 2名 정도의 訪問委員으로 추천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同僚委員들이 우리 委員들보다는 우리 水資源管理委員會에서 한두 사람 내지 세 사람 정도 第3者 推薦者를 訪問委員으로 委囑을 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同僚하시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네, 알겠습니다.

○黃好淳委員 물론 우리 委員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委員會에서.....

○羅太均委員 그것을 명백히 해야지, 委員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우리 委員이 추천한 사람을 받아주겠냐 하는 그런 얘기에요.

○委員長 閔相今 아니, 本部長님이 말씀하셨습니다.

質疑答辯을 모두 마치고 그러면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서울特別市上水道訪問委員會條例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樞 3打)

(參 照)

서울특별시상수도자문위원회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 분야의 건설기술(사용자재 포함)-수질관리 등 전반적인 상수도 전문기술 향상을 도

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상수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상수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상수도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가. 새로운 기술공법에 관한 사항(사용자재 포함)

나. 정수장 신설·개항·확장 등 건설에 관한 사항

2. 상수도의 수질향상에 관한 사항

3. 상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상수도업무에 관한 필요사항

제 3 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차장과 상수도에 관한 전문가 및 상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 4 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 7 조(회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8 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9 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

기 각 1인을 둔다.

②위원회간사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총무부장이 되고, 서기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출석 수당·여비·기타 자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委員長 閔相今 委員 여러분, 그리고 上水道事業本部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95년을 마감하면서 미진한 部分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96년에 더욱 노력하여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돌아오는 새해 丙子년에는 委員님들과 上水道事業本部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서울特別市議會 第13回 定期會 第3次 水資源管理委員會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1時 48分 散會)

○出席委員

閔 相 今	黃 好 淳	金 明 炫
羅 太 均	魯 泰 塾	宋 德 華
申 炯 植	鄭 福 辰	宋 仁 回
崔 鍾 德	金 天 柱	

○專門委員

張 奉 萬

○出席公務員

上水道事業本部長 金 東 勳